우리 협회 정관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Thoughts on Amending KIRA's Articles

2년 전부터 협회 발전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던 정관 개정안이
지난 10월 임시총회 이후 법제위원회와 합동으로 2회에 걸친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밤새운 보람도 없이 아쉽게도 이사의
수와 선임문제 등에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 단일 안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이 나올 것을 전제하여 이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쪽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및 제3의 안을
제시하는 위원들에게 골고루 원고를 청탁하여 그들의 당위성을 개진하고,
회원들께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모쪼록 이번 특집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진취적인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협회도 경쟁력이다
Institute Should Also be Competitive

이종정 / (주)호암 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공제사업위원회
by Lee Jong-Jeong

정관개정의 변화와 의미

협회창립의 법적근거는 건축사법에서 사무소개설자의 품위보전 및 업의 개선과 건축물의 개량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토록 법으로 강제했다. 먼저 정관을 제정하여 인가를 받아 1965년 10월 23일 협회는 창립되었다. 이와 같이 정관이 협회설립에 우선하여 정부의 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단체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관개정의 원인이 되는 건축사법 중 협회에 대한 내용이 크게 강제기, 완화기, 자율화 시대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째는 협회창립에서 1995년 건축사법 개정 이전까지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와 정관의 내용에서도 임원 수와 취임 승인 등 경직된 운영을 요구하는 강제시기였다.

둘째는 1995년에서 2000년 건축사법 개정 이전으로 협회설립 강제는 유지되면서 임원 수는 스스로 정하고 취임 승인도 회장, 부회장만 승인 받도록 하고, 협회사업의 내용 폭이 넓어지는 완화시기로 볼 수 있다.

셋째는 2000년 건축사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로, 협회설립 전체를 강제에서 임의화함으로써 복수단체를 허용하여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물론 정관개정의 승인은 받아야 되나 임원의 수와 취임도 회장, 부회장 성명과 임기만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자율화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줄기의 변화에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지만 국제개방화시대에 대한 경쟁력강화와 다원화된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만 생존할 수 있는 냉엄한 자유경쟁시기로 돌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점의 정관개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회원과의 관계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중요한 근본규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관개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회원과의 관계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근본규칙이 되어야

회원은 협회에 무엇을 바라는가

회원은 진실로 건축사로서 바른 위상과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협회의 대책과 대정부의 이해와 함께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애로의 원인으로 설계비의 저하, 업무량 감소, 계획 설계비의 수령구조 부재와 소규모 사무소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회원 스스로 알아서 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협회에 가입하고 그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에 이른 것이다.

이제 고전적 의미의 사무소 운영시대는 지나간 것을 알지만 건축사 혼자서 이미 환경 문제와 결부된 복합적 도시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정보소유 계층과 정보소외 계층간의 거리가 커지고 변화에 편승한 중, 대형 사무소와 그렇지 못한 소규모 사무소간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사무소의 빈부격차 심화로 불안전 운영계층의 비중은 늘어만 가 이미 4인 이하 소규모 사무소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회원들은 새롭게 요구되는 건축사의 작업양상은 조직성의 도입뿐이라고 생각하고, 전문화와 여러 분야의 조력자와 함께 함으로 변화된 시장구조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회가 역할을 시급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 전문화를 위하여 학문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정보센터)
- 전문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제도, 내용, 방식의 연구와 교육실시(교육원)
- 개인주의에 입각한 작품 활동으로부터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 작업체의 모색 방안 연구(연구소)

등으로 회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줌으로 건축문화 발전과 국민을 위한 좀 더 나은 미래 환경을 위하여 건축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장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협회에 바라는 것이다.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건축은 인간역사와 함께 한다고 한다. 그 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건축사가 역할을 다 할 때 당당히 건축이 문화임을 말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대가를 사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정관개정은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는 정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담아내는 사회성 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사가 하는 일이 사회에 바르게 인식되기 위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에 있어서도 이미 보급률이 100% 시대를 지나 선진국의 130% 시대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주택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교통과 환경, 삶의 질에서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 대도시의 뉴 타운 개발문제, 기업도시, 각종 기능도시, 지역균형개발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카운터 파트너로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함으로서 건축사로서 위치를 다져야 한다. 우리의 업무가 공공복지와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한 설계의 평가에서 사후관리까지 재산으로 수요자의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을 하므로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무주택자를 위한 해비타트(habitat)운동,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의 확보된 유지를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시설을 설계에서 관심과 소외된 계층의 주택개량문제를 실천하므로 필요한 곳 어디에서나 건축사가 역할을 다 할 때 우리는 당당히 건축이 문화임을 말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대가를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회원과 협회는 피나는 자정과 뼈저림의 고통을 요구할 것이고, 이때 협회의 경쟁력은 생길 것이다.

정관개정에 바란다

창립 40주년에 즈음하여 협회는 강한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다. 회원의 욕구가 분출되고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협회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건축사의 권위와 위상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쟁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 건축사로서 제 역할을 하였을 때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다.

이러한 모든 외부와의 경쟁과 내부로부터 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코피티션(Copetition) 능력을 갖추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정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강한 협회 조직이 요구된다.

현재 건축사회는 협회로부터 권한 흡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과 분란을 초래하고, 전문성 활용이 곤란하여 재정의 확보가 곤란한 처지에 있다. 이러한 때에 건축사의 국제자격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제도, 회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거시적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통일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협회 중심 조직강화가 요구된다.

회원은 힘이고 재산이다.

회원의 구성은 개업자중심에서 건축인 모두가 입회할 수 있는 개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원의 층과 구분에 따라 자격과 권리, 특권 등 가입방법을 정하여 관리하므로 사실상 건축대표단체로서 힘있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협회의 운영은 책임경영으로 해야 한다.

협회의 운영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회무의 집행 업무추진을 위한 상근 CEO 경영부회장의 사무기구로 1체제 2조직으로 편성하여 업무추진의 계속성과 추진성을 갖고 책임경영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 위원회는 부속기구로 속히 운영되어야 할 연구소, 교육원, 정보센터의 전문성을 위한 업무를 회원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로 소극적 의미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회원의 업무지원, 사회참여와 봉사, 수익사업을 원활히 하고 적극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 검토하여 활성화되어야 한다.

수익사업을 극대화하라.

협회의 운영은 강제가입시의 회원 회비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협회 설립과 가입이 임의화되고 이미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회원의 확대로 수익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회비는 기본회비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책임경영조직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사업, 전문성인증 및 평가사업, 출판사업, 이벤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연금과 공제사업의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시작에서 노후까지 관심을 가져주는 협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외에도 부속기구와 관련기구를 확대하면서 조직의 네트워크구축으로 폭넓은 건축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관개정은 일반 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폭넓은 경험과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는 정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많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협회 정관개정에 대한 스케치
A Sketch on Amending KIRA's Articles

박종철 / 인터플러스 건축사사무소, 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by Park Jong-Cheol

쓰기를 고민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협회에서 법제도개선기획단에 참여해 협회의 운영제도 등을 포함하여 협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본의 아니게 건축개혁실천을 위한 양심의 소리 대변인을 맡다보니 협회 일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법제위원회 활동을 해오면서 협회발전위원회와 함께 다루었던 정관 개정작업에 대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부분과 워크숍과 수차례의 합동회의를 하면서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었던 부분을 위주로 스스로 한번 스크린 해보면서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좀 더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혜안을 가진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를 갖는다.

정관을 개정하는 이유

정관개정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님을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회원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1965년 협회가 설립되고 40년이 지난 현재의 정관까지 30여 차례 이상 개정작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또 다시 정관 개정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뭔가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사실 총회가 있을 때마다 개정되었다고 해도 그리 무리한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의 연례행사처럼 또 다시 이루어지는 이번 정관 개정작업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것 같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여러 가지 법제도 변화에 따라 협회의 결속력과 영향력이 날로 약해지고, 장기적인 건축경기침체를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 불황 속에서 협회가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현 시대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에 주목, 예측하며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관이 새롭게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는 협회조직 내부의 또 다른 현실적인 갈등요소나 지역이기주의는 없는 것인지, 솔직히 필자 자신도 그 관심의 이유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단지 우리 협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회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제대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많은 회원들의 깊은 애정이 그 배경의 전부이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근본적인 조직의 재구성

정관은 아시다시피 어떤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과 규범 그리고 규준과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니 그 어구의 해석보다는 뜻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관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 협회의 정관은 총칙에서 포상 및 징계까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 총칙에서는 협회의 명칭, 목적, 조직 그리고 사업 등을 다루고 있는데, 필자는 그 중에서 정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제3조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정관개정의 출발점이 이 조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제3조 조직의 요지는 협회는 시, 도에 지부인 건축사회를 둘 수 있고, 건축사회는 분회인 지역건축사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협회 정관의 기본적인 조직구성이 협회를 중심으로 중앙집권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여 이 중앙집권형을 서울지역중심이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사실 총체적으로 정관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도로 정관 개정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직체계(중앙집권형, 지방분권형, 연방제 등)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인 정관 개정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협회 회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기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조직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조직의 역할 분담은 정관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 내용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직은 대다수의 회원들이 현 시대에서 우리 건축사의 위상과 중앙정부와의 튜닝과 대응력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시대에서 미래 협회의 새로운 역할론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의견을 한곳으

어구의 해석보다는 뜻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욱 절실
큰 원칙과 전제를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나를 희생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조직으로 관리 운영된다면 이사 수의 증원을 통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상임이사제도 고려해 봐야

로 모을 수 있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정관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회발전위원회나 법제위원회의 중론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앙집권형을 원칙으로 정관 개정작업이 시작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 협회가 하나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즉 법인으로 구성된 '대한건축사협회' 하나인 것이다. 단지 그 아래 하부 조직으로써 지부인 건축사회와 분회인 지역건축사회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간혹 이것을 간과하고, 일부 건축사회는 별도의 법인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아마도 그 주된 원인은(현재 교부금 형태로 협회에서 건축사회로 일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축사회의 재정관리와 운영이 협회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협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체제로 운영되려면 그 재정과 직원의 인사관리 문제부터 개편, 통합 관리되어야 하고, 당연히 재산도 협회 하나의 법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찰도 예상되며, 단기적인 과제로 실현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상당한 논의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큰 원칙과 전제를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나를 희생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기에는 그 강이 너무나 넓고, 하나 됨을 외치는 그 목소리는 이제 잘 들리지도 않을 지경이다. 우리는 협회의 하나 됨에 구조적으로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는 것부터 정돈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부분을 덮어놓고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기에는 협회의 미래가 너무나도 창창하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 그것이 협회조직의 잘못된 부분을 근간부터 바로잡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하나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구성과 선출 그리고 운용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사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이사회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협회의 이사회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보다는 소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아는 인맥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진 듯하다. 우리는 이사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협회의 대내적인 일에서 대외적인 업무까지 중요한 모든 일들을 이사회에서 심의 · 의결하고 또 집행까지 하고 있는 만큼 그 이사회의 중요성은 이루다 말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사실 회원들이 협회는 뭘 하느냐고 반문하는 대상이 결국 이사회는 뭘 하느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만큼 이사회의 활동유무는 회원들에게 중요하다. 이제 이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협회를 위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이사들로 구성되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외부의 자극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내부의 꿈틀거림을 밖으로 정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사회가 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책임성, 전문성,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그 틀을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협회가 그 흐름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전문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 전문성을 가진 이사를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여 국제문제와 국내문제 그리고 정책과 재정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성으로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에 있는 건축사회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최근 30~40대가 회원의 70%를 구성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참여와 요구를 유도하고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회원의 증가에 따른 남녀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적정 이사 수는 어느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책임성, 전문성, 대표성을 모두 갖추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최근 들어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며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다. 16개 시도건축사회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건축사회마다 1인의 이사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고, 그 배경에는 건축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협회에 전달되지 않고 사장된다는 건축사회의 불만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현행 정관에서도 건축사회의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을 본다면 건축사회의 요구사항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건축사회는 단지 그들의 의견이 협회에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그들 스스로 의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이 중론인 듯 하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개정되는 정관에는 건축사회의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시도건축사회 회장 또는 그 대표단이 정기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대의원의 수를 정예화 하여 그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본연의 임무인 회원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검토해 볼만하다. 그리고 이사회의 상정안건이나 의결안 등도 특정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회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적정수의 이사를 선출, 구성하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책임성, 전문성, 대표성이라는 또 다른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사회를 모색하자면 우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필자는 우리 협회 정관개정의 기본틀이 중앙집권형이라는 대 전제를 앞에서 언급했고, 이 의미는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과 그 집행부가 소신 있고 책임 있게 협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그러한 맥락에서 책임성과 전문성 그리고 연령과 성별 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소위 임명이사는 회장 직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에는 회원들이 그 임명이사의 전문성을 공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인력풀 제도 등)가 필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사회의 회원 수 등을 고려한 비례대표를 채택하여 해당지역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사전에 정한 이사 수만큼 소위 선출이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단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선출 이사 수보다는 임명 이사 수가 많아야 됨을 전제로 하며, 그 이유는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소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를 기본적으로 갖추자는 의미다. 현재 협회의 조직구성으로는 최근 늘어난 회원 수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이사 수는 개인적으로 20인을 넘지 않는 것이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전국의 건축사회가 각각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회 하나의 법인조직으로 관리 운영된다면 이사 수의 증원을 통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상임이사제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조직과 관련된 회원문제

협회는 현재 개업 건축사를 위주로 한 회원 제도를 개선하여 모든 건축사 자격소지자는 물론, 미래의 건축사(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 건축사보, 건축 관련학과 학생) 그리고 건축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건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회원제도로 유도하고, 특히 5년제로 개편된 학교의 재학생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협회의 회원으로 자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원구분별 권리와 의무를 실효성 있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앞의 조직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협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지부인 건축사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사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 분회인 지역건축사회가 활성화 되어야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말초 혈관인 지역건축사회가 왕성해야 협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와 관련하여 위임된 모든 문제 특히, 협회가입과 퇴회문제 그리고 회비 등은 해당 건축사회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역건축사회에도 회원들이 그 절차의 강제성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의원의 구성과 역할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반면, 거기에 따른 견제기관으로 대의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회원 20명당 1인 정도인 400여명으로는 순발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회장 선거용으로 전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구성도 시도건축사회장과 지역 건축사회장이 임의로 지명하여 선출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협회 대의원으로써 그 본연의 자세를 가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의원의 수를 정예화 하여 회원 40명당 1인 정도인 200여명으로 하고, 또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그 권한을 확대하고, 대의원을 총회 때에만 가동시킬 것이 아니라 ON-OFF 라인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인터넷카페 등을 운용하여 평상시에도 협회의 업무를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의사결정을 통하여 협회가 유기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며, 본연의 임무인 회원들의 뜻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줄이면서

많은 부분을 거론하지 않았고, 상당히 상세한 부분들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다. 정관 전체 내용 중에서 거론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다같이 중요하고, 다같이 간과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그 부분 중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합의도 있었지만 가끔은 밤늦게까지 얼굴 붉히면서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했던 부분도 꽤 많았던 것 같다. 아직 여러 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들도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오늘의 이러한 모든 고민들이 우리 협회와 회원들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원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회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개정에 대한 의견
A View on Amending KIRA's Articles

강성익 /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협회발전위원회 위원장
by Kang Sung-Ik

대한건축사협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크게 4가지 분야 (협회의 정체성 확립, 조직의 운영 및 관리방향, 제정운영 방향, 회원 업무개선 및 지원분야)로 나누어 협회 법제위원회와 협회 발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하고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그동안 대체적으로 협의된 내용과 필자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일부분만 정리해 본다. 결코 확정된 안이 아님을 첨언하며, 참고로 현행 정관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같은 부분은 생략하고, 쟁점사항이거나 변경된 부분과 추가할 내용만 언급하기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기술의 향상 및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연구 및 지원과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국제화에 부응하며, 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증진,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4.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건축관련 신기술의 교육. 자격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6. 국토계획 및 건축에 관한…
16. 건축관련 신문, 방송, 통신 등 정보 관련사업
17. 회원 업무 개선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8. 건축박물관 및 체험학습장 설치운영

② 협회는 제1항4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게 매년 일정기간의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의원)① 대의원은 각 건축사회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4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 그 단수가 20인을 초과할 때에는 1인을 더 선출하되 협회의 역대회장과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협회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9조(임원)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4인 (상근, 내무, 외무, 국제담당부회장)
3. 이 사 : 35인 이내 (회장1인 부회장 4인 포함)
4. 감 사 : 2인

② 이사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시, 도 회원이사

회원 500인 이하	1인 / 12 =	12명
회원 501-1000인이하	2인 / 2 =	4명
회원 1001-1500인이하	3인 / 1 =	3명
회원 3001-3500인이하	7인 / 1 =	7명 소계26명

2. 비례전문이사 26명/ 30% = 8명

계 34 명

제2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이사중 제19조 2)항에서 정한 시, 도 회원이사는 해당건축사회에 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③ 비례전문이사의 선출은 직능대표, 여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④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⑤ 이사 정원의 3분의1 이상 또는 감사 2인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⑥ 기타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취임한 날부터 직무를 개시한다.

③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4조(건축사회총회)②

3. 정회원 총수의 3분의1 이상(단 회원수가 600인을 초과할 시는 6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5. 1000인 이상인 건축사회는 200인 이상으로서 정회원의 8분의 1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하며,

제55조(회비미납의 징계)① 정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협회 회장 또는 건축사회 회장은 이사회 또는 간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 경고 및 권리정지
2. 18개월 이상 : 제명
3. 제1항1호의 징계를 받은 정회원이 회비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완납 7일 후부터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It's Never T●● Late

임두기 / 다공종합건축사사무소, 본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by Lim Doo-Ki

우리 협회의 집행부(회장단)도 독자적인 역할이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결정을 이행하는 임무'이며,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이행하는 집행부, 책임지는 집행부가 필요

협회의 바로잡음이 우리의 살길이다. 우리의 현안적 문제들의 해결은 오직 협회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연한 계기로 지역건축사회의 지구장 겸 운영위원과 2년여의 서울건축사회 홍보위원회의 활동으로 조직을 알게 되었고, 2003년 말 협회의 '법, 제도개선기획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공부했다. 연초부터 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협회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서 정관개정 작업의 일원이 되었다.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이 전제되며, 구성원간의 의견 충돌 등 난해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간의 감회와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 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단하여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절충적인 개선안을 최소공배수로 제안하고자 한다.

과정과 서두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협회의 체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협회의 탄생이후 유사성격의 타 단체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도 이렇다하게 뚜렷한 변화를 못 이루고 작금에 이르렀다. 급격히 늘어나는 회원 수의 변화나 시대의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체제에 대한 개선요구는 우리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각 시도건축사회의 법제위원 등이 주축이 된 정관개정위원회의 개선안은 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이후 협회발전위원회에서 수개월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완성된 개선안 역시 이사회에서 기각되어 총회의 의견을 묻기도 전에 무산된 바 있다.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과정과 객관적인 절차가 생략되었고, 단순히 집행부의 임기 또는 임원의 숫자에 대한 변화에 치중한 개선안들로 설득력이 없었다고 진단할 수 있으며, 확고한 체제변화의 의지가 결여된 것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연초부터 기존의 개정안들을 바탕으로 법제위원회에서 협회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하여 다시 개정안을 정리하고 있다. 임원의 겸직금지 문제 등 조항별 종속요소보다는 뚜렷한 개선이라는 주 요소를 설정하는 데에 가장 많은 애로가 있었고, 다분히 참여인들 모두 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관계로 위원들 간의 의견일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종속요소인 시도건축사회의 위상과 임원의 숫자, 선출방법 등에 대한 문제들로 할애했다.

동일한 법체계와 일관된 업무체제하의 전문인들이 모인 단체에서 행정구역별 분권화를 거론하고, 근거 없는 막연함으로 서울과 지방을 구분 지으려는 일부의 의견들은 실로 안타깝기까지도 하다. 하나로 결집하기도, 결집하여도 어려운 시국임을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위기에 빠진 협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 수많은 회원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삶이 고단해서만은 아니다. 내일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일 것이다. 법인체제에서 이사회의 바로잡음은 대안이고, 내일이고 희망이다. 작금과 같이 오로지 지방의 시도건축사회의 권리와 생존만을 생각하는 단편적인 주장들은 공멸의 지름길이고, 대안도 내일도 희망도 될 수 없다.

협회의 설립목적은 무엇보다도 전문인들의 이익단체로서 공익은 차치하고라도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옹호에 그 기능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회원들이 느끼듯 현실은 너무나 부족한 면들이 많다. 개혁이든 개선이든 정관개정은 과정상 필수 불가결하며, 피폐해진 건축사들의 직업 환경에 늦은 감도 있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과정이 따르겠지만 양질의 의견들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현행의 문제점들

1. 회원 대 협회
- 회원(계란) : 이런 문제는 협회에서 해결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야? 협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회비가 아깝다. 자리싸움만 한다며?
- 협회(닭) : 회원들의 관심도 저조. 참여의식 결여. 회비 납부상태 불량. 예산 부족. 목소리(의견)의 다양성. 회원들의 업무속성 및 지역편차 등에 따르는 계층화.

2. 대의원(총회)
- 회장의 선출만을 위한 기구로 전락, 책임감 결여 및 참여의지 부족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관개정, 임원선출 또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한정되는 결의안적 한계
- 상향식 선출이 아닌 하향식 임명으로 인한 대표성의 결여

3. 위원회
- 연 1~2회 소집되는 등 대부분 형식적이고 현실성 없음.
- 구성원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활성화되지 못함.
- 관련 위원회 및 이사회 등과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활동결과가 실제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함.

4. 이사회
- 회의체 운영의 대부분을 결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집행부로서의 실질적인 역량 및 기능의 상실
- 이사의 선임에 각 지역별, 계층별 안분으로 인한 부차적, 비합리적인 문제점 파생으로 대표성 문제 상존
- 지방회원들의 참여기회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문제 대두
-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해도 책임구분이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집행의지 실현 불가능, 책임적 신뢰도 결여
- 회원의 숫자에 비례하여 극소수로 제한된 회원만이 이사로서의 의결권이 있으므로 대의성에 대한 문제점 내재(유사 성격, 규모의 타 단체와 비교 시 과부족)

5. 회장(회장단, 집행부)
- 회장의(하향식 임명에 의한) 대의원 간선제 선출로 인하여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도 저조
- 전임 회장단에 의한 예산집행 1년과 레임덕이 우려되는 잔여임기 1년으로 효과적인 집정능력 발휘기회 부족
- 회장단 또는 집행부라고는 지칭하나 이사회나 위원회 또는 사무처라고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고, 책임한계 또한 모호하여 실질적이지 못함. 이사회의 구성 성격상 자의적인 집행부(참모진)로 보기 어려움.
- 회장에게 집중된 기구 또는 조직 편제이나, 대부분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소신에 의한 능력 발휘기회 부족

6. 기타
- 사무처(행정조직)를 제외한 모든 기구가 현업의 종사자들로 구성되므로 업무처리의 지속성, 신속성 결여

체제개선의 대원칙

1. 회장의 선출은 선거방법을 연구하여 직선제로 하고, 임기를 현행과 같이 연임이 가능토록 하되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함.(합의)
2. 부회장의 직능별 역할부여와 대외활동의 위상강화를 위한 인원수 확대(합의)
3. 이사의 상향식 선출과 인원확충으로 명실상부한 대의, 의결기구 확립(합의, 회의진행의 효율성 문제 대두)
4. 실질적인 집행부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상임이사회의 기구 설치(제안)
5. 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건축사 상근이사제도 도입(합의, 유급직)
6. 예산집행의 감시뿐만 아니라, 업무감사에 치중할 수 있도록 감사 1인 증원 또는 감사조직 구성(합의)

체제구성에 대한 제안

1. 현행의 체제를 개선하여 회원(선거) – 대의원회(총회) – 이사회(의결기구) – 상임이사회(집행기구)로 구분하는 상임이사제도 도입으로 의결과 집행업무를 명확히 구분함.
2. 대의원회(총회)
- 회장의 직선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도의 상승에 기여하는 반면, 그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경제적 효율성 검토 필요(구성인원의 축소 검토)
- 200인 내외(회원 40인당 1인 기준, 소집 횟수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기존안과는 일치하나 성격이 다름)

3. 이사회, 상임이사회

단순히 이사 숫자를 몇 명쯤 더한다고, 지방에서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하여 해결될 일은 없으며,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분권적 체제는 더더욱 정답이 될 수 없어

– 법인의 유지는 이사회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나 8,000여 대규모 단체의 특성상 기능성 발휘와 효율성을 목적으로 대표성이 확립되는 이사회의 결의 도출, 상임이사회의 회무집행에 절대적인 권한과 책임성 부여

– 시도건축사회의 상향식 선출 42인(현 시도건축사회 소속회원수 대비 최소 1인 기준, 200인기준 사사오입) + 상임이사 13인 전후(부회장 5인, 상근 2인 포함 전문이사 8인–현 위원회 직능기준, 회장이 직접인선)

4. 집행부(회장단)

–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회를 집행부라 하고, 권력기구(의결)가 아닌 실행기구(집행)가 되도록 함.

– 회장의 실질적인 참모진으로서 책임을 강화시키고 권한(자유인사권 등)도 부여함.

5. 위원회

– 책임(전문)이사에 의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로서 분야별 정책의 입안에 초석을 구성토록 함.

– 신설된 연구소와 역할을 구분하여 자료의 수집 제공 등 원활한 공유체계 확립

회의소집 효율 비교검토(회장별도)

1. 현행

– 이사회 : 18인 × 12회 = 216(회.인)

– 대의원회(총회) : 약450인 × 1회 = 450(회.인)

– 합계 : 666(회.인)

2. 개선

– 상임이사회 : 13인 × 12회 = 156(회.인)

– 이사회 : 55인 × 4회(분기별 1회) = 220(회.인)

– 대의원회(총회) : 약200인 × 1회 = 200(회.인)

– 합계 : 576(회.인)

3. 비교분석

– (회.인)별 단순비교로 연간 약 90(회.인)이 절감되며, 의결기회 횟수가 13회에서 17회로 증가됨.

– 상임이사회의 구분으로 결의의사에 대한 책임적 집행력이 강화됨.

– 시도건축사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이사회 참여기회로 의결의 신임도가 고양됨.

상임이사회의 역할

회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구성되고, 분야별 위원회를 총괄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함.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회칙(정관),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7.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이사회의 역할

– 기존의 이사회의 역할에서 상임이사회로 업무 분장되는 역할을 제외하고 보완

– 주로 회원들의 업무와 관련되는 협회의 정책적 입장에 관한 문제(대외적)에 대하여 의결

– 집행부(상임이사회)에 업무부여 및 직접적인 통제와 견제

총회(대의원)의 역할

– 기존의 역할에서 회장의 선거역할 등을 축소하고 보완

– 일부 임원(감사 등)의 선출 및 임원의 임, 면 결의

– 주로 협회의 운용과 조직 및 회원의 관리, 권리 등에 관한 문제(대내적)에 대하여 의결

상임이사회(실질적인 회장단, 집행부)의 구성

– 회장

– 부회장(5인)

1. 수석부회장(1인) : 회장업무의 직속 총괄보좌
2. 행정, 복지 담당부회장(1인, 상근) : 사무처를 총괄하고 대 건교부업무 등 행정업무 총괄, 예산 및 자금, 공제사업 및 회원들의 복지업무 담당
3. 정책 담당부회장(1인) : 건축사 업무관련 법규, 제도 및 협회의 정책 등을 총괄
4. 국제업무 담당부회장(1인) :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대외적, 국제적인 업무 총괄
5. 공보 담당부회장(1인) : 협회의 대내 · 외의 홍보를 총괄하며, 협회의 대변인격 역할을 함

– 전문이사(8인)

1. 건축 및 법제 담당이사 : 상근(유급)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의결과 집행의 올바른 체계를 갖추어
실효적인 회장단 또는 기능적인 집행부를 만들어야

2. 국제업무 담당이사
3. 홍보, 편찬 담당이사 : 상근(유급)
4. 공제사업 담당이사
5. 정보관리, 교육, 시험 담당이사
6. 협회발전위 담당(문화체육, 청년, 여성분과)이사
7. 중앙윤리위 및 고충처리(회원 민원) 담당이사
8. 무임소 이사(유사 시 특별업무 담당)

비고

- 나름대로의 사적 의견임에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회장의 선출 역할이 배제된 대의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지는 추가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존치 여부 등 이사회와의 상관관계 설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이사회에서의 집행부(상임이사진)의 수적 열세는 집행부의 역량 여부에 따라 그 기능이 좌우되는 것이며, 회무집행의 장악력 상실 시는 지도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수적 우세를 전제한다면 개선의 의미가 없음.

맺음말

회비문제 등 회원의 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업무나, 기본업무인 설계, 감리 업무정상화도 요원한데,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폐지입안 건의 현안에도 이렇다하게 명쾌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국제화 또는 업무영역 확대, 수익사업 등의 허울은 그저 사치일 뿐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독자적 역할을 부여받으며, 유엔의 모든 결정을 이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우리 협회의 집행부(회장단)도 독자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정을 이행하는 임무'인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행하는 집행부, 책임지는 집행부다. 이행과 집행을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현안으로 큰 아이템으로만 50여 가지가 산재해 있다. 현재의 체계와 시스템으로는 점점 더 누적될 뿐 해결이 가능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함이 우리에게는 슬프지만 냉정한 현실이다. 단순히 이사 숫자를 몇 명쯤 더한다고, 지방의 시도에서 이사회에 참여한다고 하여 해결될 일은 결코 없다. 연합이니, 연방이니 하는 분권적 체제는 더더욱 정답이 될 수 없다.

목적달성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결과 집행의 올바른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며 실효적인 회장단 또는 기능적인 집행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충분한 권한도 주어야 하고, 명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된다. 그런 연후라야 그에 따른 책임도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치이며 도리이기도 하다. 집단으로 모은 힘의 가장 유익한 활용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근간(根幹)을 고치자
Let's Rething Our R●●ts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본협회 홍보편찬위원회 위원장
by Chang Yang-Soon

정관의 현실 – 무엇이 문제인가

본 협회의 정관은 1965년 협회 창립과 함께 제정된 후 40년 동안 31회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는 거의 매년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횟수만으로 보면 매우 훌륭하고 완벽한 정관이 되어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본 정관이 태동한 후 20수년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만 하면 소위 밥벌이가 보장되던 좋은 시절이었다. 그러나 IMF 환란 이후 줄어드는 일감과 늘어나는 건축사의 숫자로 옛날은 향수가 되어 버렸고, 한 사무실에 보조원 보다 건축사가 더 많은 기현상이 속출되고 있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기실 이러한 문제는 IMF 환란이 아니더라도 주택수요가 100%를 넘어서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부터는 어느 나라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비한 근본적인 정관의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임시방편만을 되풀이 해왔다. 한마디로 시류를 앞서가지 못하고 뒤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더구나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를 잘 감지하지 못했으며, 화두로 떠오른 연합제에 대하여도 10여 년 전부터 연구를 해 왔으나 항상 지지부진하였다. 또한 현 중앙제와 비교하여 그의 장단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충분히 논의하여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정관개정 작업을 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도 원인의 한 요소라 하겠다.

작년도 협회발전위원회에서 정리한 안에 첨삭을 한 금번 안은 협회발전위원회와 법제위원회가 합동으로 숙박까지 하면서 밤새워 워크숍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에서 위원들 간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미완의 형태로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노력에 비해 빛 바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중앙제냐 연합제냐 근본부터 정립해서
정관의 기본 틀부터 다시 짜야

이 또한 위에 열거한 근본적인 성찰 없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개정의 전제조건

모두에서도 기술했듯이 집행부는 중앙제냐 연합제냐를 회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어느 한쪽으로 합의도출을 해내야만 한다. 현재의 안을 보면 분명히 현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안을 못내는 것은 지역건축사회의 이사회 참여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현재의 난국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연합제보다는 중앙제가 낫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수를 증원하여 모든 지역건축사회에 배려하라는 것은 모순되는 요구이나 소외감이란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우리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살고 있다. 전국이 반나절 권 안에 속해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 권력은 지자체의 유아기를 벗어나 정착기에 있다. 이런 점만을 고려한다면 중앙제를 할 수도 있고 연합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안을 직시한다면 중앙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날로 좁아지는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대처, 정상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300인 이하의 대부분 지역건축사회 그리고 건축학 교육 인증제도, 건축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교육 등과 FIKA 3단체에서 우리의 권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앙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집행부는 이러한 것들을 막연하게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의 뜻이 한곳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이 중앙제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에 입각하여 제반 문제를 다루어 보자.

문제와 해결 방법

첫째, 회장 선출 방식이다.

현 개정시안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회장의 선출을 회원 직선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간 많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당연한 것이다. 400명 미만의 대의원, 앞으로 40명당 1인이면 200명 정도의 대의원 숫자이다.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회장 되기보다 한결 쉬운 것이 본협 회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선거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이며, 많은 숫자로 정족수 파동과 회의의 비효율성 등 폐단이 많은 제도이다. 이제 1억~1.5억 원 정도면 금융결제원 방식의 카드를 만들어 전자투표에도 쓰고 건축허가 접수나 감리 관계 등에서 본인 확인을 관청에서 하게 함으로써 도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경제가치가 높으며, 설령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이다.

둘째, 이사회의 2원화와 대의원제도 폐지이다.

총회에서 대의원이 하는 일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 정관개정,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회장을 선출할 때 감사와 이사까지 선출(감사는 회장과 동일한 방식, 이사는 러닝메이트 제도 등)해 버리면 정관과 예결산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명당 하나냐, 40명당 하나냐 하는 대의원의 역할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대의원제도를 없애고, 이사회를 2원화하여 이를 대치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지역건축사회의 소외감도 없어지고 결속도 다져지며 회의 능률도 제고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로 나눈다.

상임이사회는 위원회 숫자와 동일한 이사 수로 하여 소위 유임소이사가 되게 한다. 이들의 임무는 현재의 이사회와 같다. 이사회는 지역건축사회당 최소 1명~5명 정도를 회원비례대로 할당하되 당해 건축사회가 선임토록 한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2명 정도를 이사로 호선하게 하면 전체 숫자는 회장단을 비롯한 상임이사(유임소이사) 20여명, 지역건축사 지분 30여명, 위원회 20~30여명 그리고 역대 회장 20여명 등 90~100명이 되며, 그 외 지역 건축사회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대의원의 임무를 대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당위성과 장점을 갖는다.

- 각시도회에 최소 2명의 이사가 있음으로 지역간 소외나 갈등이 없어진다.
- 인원이 100명 정도이므로 400여명이 모이는 대의원 총회보다 정족수 문제, 장소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고, 문제해결을 쉽게 하여 회의 능률을 제고시킨다.
- 경비가 1/3~1/4로 축소되고, 사안에 따라 자주 소집할 수 있음

어차피 필요한 금융결제원 방식으로 회장 직선해야
비능률의 대의원제 폐지하고 이사회로 대신, 기동성 살려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로 2원화 하여 지방의 소외감 덜어줘야
전문화된 위원회와 전문인에 의한 책임 경영 실현해야

으로 현안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셋째, 위원회 활성화 문제이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 위원회 중심의 협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위원들의 임기가 1년이어서는 안 된다. 3년 정도 임기에 몇 명은 연임을 하여 해당 분야에서만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상임이사의 경우 해당 위원회 활동을 5년 이상 한 회원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그가 위원장을 겸무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규정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그간 우리는 언젠가부터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이사와 위원장을 분리함으로써 위원회의 모든 사항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비능률적인 제도를 시행해 왔다. 또한 위원장간의 대화가 단절됨으로서 위원회가 고립되고,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맹점과 단점을 알면서도 신임회장은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이 제도를 방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신임회장은 위원장에게 위원의 인선을 정관대로 위임하고 월권하지 말아야 하며, 임기 중 만기된 위원만 교체할 수 있게 함으로서 누가 회장이 되던 추진 업무가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회장 등 직제의 개편이다.

상근부회장을 복수로 하여 하나는 대관관계 및 법규, FIKA 등 건축분야를 전담하는 현행 부회장과 유사한 업무를 맡기고, 또 하나는 경영계의 명퇴자들을 영입하여 기금의 활용방안, 수익사업의 극대화, 사무처의 업무 능률제고 등 경영을 맡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양두마차가 협회라는 수레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하며 회장은 마부의 역할만 하면 된다.

개편의 효과

위와 같이 정관과 체제를 개편할 경우 대한건축사협회는

- 각 위원회는 전문화된 위원들의 깊은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협회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이고,
- 상임 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유관 위원회 담당 이사들과 그 자리에서 협의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부회장들은 자기 분야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하며, 의결사항을 잘 집행하면 될 것이다.
- 이사회는 정관의 개정, 예결산의 승인 등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면 된다. 감사 또한 주어진 감사의 직분을 다하면 될 것이다.
-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면 회장은 이러한 의결사항을 양 부회장에게 배분하고, 감독하는 선장의 역할과 대외에 건축사의 얼굴이 되면 되는 것이다.

회장은 예지의 형안으로 밑그림만 그려야
회장이 없어도 지장 없을 정도의 체제 갖추어야

따라서 경직성 예산이 태반인 상태에서 전임회장이 세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말년에는 레임덕 현상 운운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아닌 협회에서 레임덕이 무엇이며 무슨 예산을 더 세운단 말인가. 위와 같은 정관이 되면 회장이 없어도 협회는 돌아갈 수 있다. 회장은 대외업무와 큰 밑그림만 그려주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제반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관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규정의 개정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말썽이 되었던 이사의 겸직사항 등도 보다 완벽한 조문이 없기에 발생한 것이다. 정관 개정 후 다시 고치더라도 우선 미비한 것은 고치고 봐야 할 사항이다.

회장 불신임의 조건이 '2/3 발의로 과반 참석에 2/3 찬성' 이라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법리에 맞지 않는다. 개정안 중 이러한 무리수가 눈에 띄나 이러한 것들은 지엽에 불과하다. 문제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다.

맺는 글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어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 활성화, 유임소이사에 의한 능률적인 상임이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각 지역의 대표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역대회장들로 구성하되 그 인원이 적어 기동성이 강화되고, 속전속결로 항상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사회 그리고 앞날을 예지할 수 있는 형안과 어려움에 굳건히 앞장설 수 있는 패기 있는 회장이 있을 때 우리의 협회는 21세기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서두르지 말자. 새 회장 선임 후 1년간 모든 회원들의 뜻을 집약하여 새로운 정관을 만들자. 그리고 실천해 보자.